

## 동반성장론 중요내용 설명서(협력기업용)

### 1. 상품개요

#### • 상품의 정의

- 동반성장론은 기존에 1차협력기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서 진일보하여 구매기업의 신용공여 범위를 4차협력기업까지 확대한 대출상품으로써,
- 구매기업이 채권대금을 결제하지 않더라도 협력기업은 대출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상환청구권없는 방식(Without Recourse)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입니다.

#### • 상품명

- 동반성장론(일반) : 1차 협력기업에 대한 대출상품
- 동반성장론(협력) : 2차 이하 협력기업에 대한 대출상품

### 2. 상품흐름

#### • 채권의 발행

- 구매기업은 1차 협력기업에게 「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」에서 정한 외상매출채권 만기일 내에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(원청채권)을 발행
- 1-3차 협력기업은 상위기업으로부터 받은 채권을 근거로 받은 채권 만기일과 동일하거나, 그 이후로 만기가 도래하는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하며, 상생매출채권 최장 만기일은 「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」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.

※ 1. 1차 협력기업 : 받은 채권금액에서 이미 발행한 상생매출채권 금액 및 본인이 대출을 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 내에서, 구매기업과 은행이 약정한 상생매출채권발행가능일부터 매출채권 만기일 전 은행영업일까지 최저 **1만원** 이상으로 채권발행 가능. 다만, 원청채권 결제일 당일에는 상생매출채권을 발행 할 수 없습니다.

2. 2~3차 협력기업 : 받은 채권금액에서 이미 발행한 상생매출채권금액 및 본인이 대출을 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 내에서, 받은 채권발행일+1은행영업일부터 매출채권 만기일 전 은행영업일까지 최저 **1만원** 이상으로 채권발행 가능. 다만, 원청채권 결제일 당일에는 상생매출채권을 발행 할 수 없습니다.

3. 1차 협력기업의 상생매출채권 발행은, 원청채권의 양도계약을 포함하는 동반성장론(일반) 여신약정을 체결하고, 동반성장론(협력) 약정을 추가로 체결한 후 가능

#### • 대출의 실행

- 1차 협력기업 : 구매기업과 은행이 협약한 대출실행가능일부터 채권만기일 1은행영업일전까지 분할하여 대출실행 가능
- 2~4차 협력기업 : 채권발행일+3은행영업일부터 채권만기일 1은행영업일전까지 분할하여 대출실행 가능. 다만, 원청채권의 결제일당일에는 구매기업이 원청채권을 결제하여 결제대금이 에스크로계좌에 예치된 이후부터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#### • 채권의 결제 및 대출금의 상환

- 구매기업이 원청채권 만기일에 해당 원청채권을 근거로 실행된 모든 대출금 및 채권대금 결제
- 원청채권 결제 시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고 대출도 실행되지 않은 하위 상생매출채권 대금은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 명의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
- 구매기업의 원청채권 결제로 2차이하 하위협력기업이 실행한 대출이 조기 상환될 경우 환출 이자는 각각의 상생매출채권 발행기업에게 지급
  - ※ 4차 대출상환 → 3차에게, 3차 대출상환→2차에게, 2차 대출상환→1차에게 환출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임.
- 원청채권 만기결제 후 상생매출채권 만기일 도래 시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자금으로 채권대금 결제
- 원청채권 만기결제 후 2~4차협력기업이 대출실행 시 익영업일에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자금으로 대출금을 중도상환하고 환출 이자는 각각의 상생매출채권 발행기업에게 지급

- ※ 1.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 :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해 설립된 동반성장위원회 산하 재단
- 2. 대출을 받지 않고 만기결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기업이 원청채권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만 대금수령이 가능하며, 구매기업의 원청채권 미결제로 인하여 본인이 발행한 상생매출채권이 미결제 될 경우 해당 상생매출채권 대금의 결제의무는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3. 동반성장론(협력)대출은 협력기업에 의한 개별적인 중도상환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# 3. 대출이율

- 구매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산정된 대출금리를 4차협력기업까지 적용합니다.

### 4. 수수료

동반성장론 이용에 따라 2~4차 협력기업은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
#### • MP수수료

- 동반성장론(협력)대출 취급 시 마다 대출취급 금액에서 MP수수료를 차감하여 납부 합니다.

#### • B2B이용수수료

- 상생매출채권이 전액 만기결제되는 경우에 한해 만기입금 금액에서 차감하여 수수료를 납부 하며, 일부라도 대출을 실행하였거나 하위로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

- ※ MP수수료율은 협력기업과 MP사와의 약정에 의해 정해지며, B2B이용수수료는 은행과 MP사의 약정에 의해 MP사별로 달리 정해지므로 실제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MP사 사이트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.

※ 이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
\_\_\_\_\_지점 Tel.        -        -  
담당자 :